

01 기획특집

-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진출시 법률적 유의점 (정철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중국 정부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가입 관련 의견수렴 절차 진행 (김옥림 중국변호사)

06 ¡Hola! 중남미

- 브라질 진출 시 주재원 비자 취득 (이유경 변호사)

10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브라질)] 항공기 생산 대국...중형제트기 선두(정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베트남)] 거품 빠지는 주택·오피스...투자적기(김주현 변호사)
- [Global 트렌드(중국)] 220여 개 상장...시장 시스템은 불안(최정식 변호사)
- [Global 트렌드(일본)] 한 중 투자 잇따라...日 공장도 속속 건립(김홍영 전문위원)

13 주목! 이 판례

-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공사대금】)

15 최신법령

-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 상향조정 등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

17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자원 & 인프라 투자 법률 세미나' 개최

20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캄보디아 사무소 이전
-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1 Edition에서 2년 연속 한국 Shipping & Maritime 및 Insurance & Reinsurance 2개 부문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
-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수련대회에서 '신경정신과 의료분쟁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 외
- 최진숙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교육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 및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강의
- 이행규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투자 법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
- 김도요 변호사, UN기후변화협상 AWG-LCA 17차 회의 및 AWG-KP 16차 회의 두번째 세션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금융투자협회에서 '러시아 자본시장 제도 및 법률제도 소개'를 주제로 강의
- In Van Chhoan 캄보디아 변호사, 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인 중 한 명으로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기획특집)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진출시 법률적 유의점



좌로부터 정철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최근 한국의 해외자원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인허가의 종류

인도네시아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의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허가의 종류는 크게 ① '생산임지상 천연림 내의 목재 임산물 이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pada Hutan Alam, 이하 "IUPHHK-HA")'와 ② '생산임지상 기업조림지 내의 목재 임산물 이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pada Hutan Tanaman Industri, 이하 "IUPHHK-HT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조림회사가 취득할 조림사업 인허가는 기업조림지 내의 이용사업허가인 IUPHHK-HTI로서, 해당 기업조림지 내에서 조림지 정리작업, 양묘, 식재, 무육, 수확 및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조림지 내의 목재 형태 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되는 사업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IUPHHK-HTI의 허가기간은 최장 100년까지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능하고, 허가 유지를 위해 장관이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인도네시아 정부 법률 제6호(No. 6 Tahun 2007)」 제1조 제13호, 제15호, 제53조 참조].

2. 외국인투자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

한국투자자가 조림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투자법제상 조림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항목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투자제한 목록(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6 of 2010 on 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에 의하면, 천연림 이용에 관한 허가인 IUPHHK-HA는 100% 인도네시아 내국인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법인만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림지 이용에 관한 허가인 IUPHHK-HTI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규상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IUPHHK-HTI 법인의 지분 비율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허가 발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또는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실 무상 그 재량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조림회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인허가 절차

IUPHHK-HTI를 발급받기 위한 개략적인 절차는, ① 조림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동의서 등을 받아 ② 산림개발청장, 산지계획청장, 산림지청장, 산림지소장이 참여하는 일반조건 및 기술조건 심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시행명령서(SP-1)가 발급됩니다. 이후 ③ 산림부 등록 컨설팅업체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를 거쳐 산림부장관이 기본허가서(SP-2)가 발급합니다. ④ 산림부 장관이 환경평가결과를 접수한 후 산지계획청장은 작업지역 도면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산림개발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림개발청장이 조림허가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산림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⑤ 산림부 장관은 조림허가 결정서(SK 최종결정서)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발급하고, ⑥ 결정서 접수 후 개발청장이 임지세 납부 명령서를 발급하여 허가신청자가 임지세를 납부하면 최종결정서가 허가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4. 조림회사 지분 양수도의 시기적 제한

(1) IUPHHK-HTI 취득 후의 지분양수도

「2009년 5월 15일자 인도네시아 산림부 규정(Ministry of Forestry Regulation No. P.34/MENHUT-II/229)」(이하 "산림부 규정 No.34")에 의하면, IUPHHK-HTI 허가 대상 사업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① IUPHHK-HTI를 취득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② IUPHHK-HTI 자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②의 방식으로 허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발급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IUPHHK-HTI 취득 전의 지분양수도

한편 IUPHHK-HTI 최종결정서 발급 이전의 조림회사의 지분양수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IUPHHK-HTI에 대한 최종 허가(SK 최종결정서)를 발급받기 전에 허가를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맺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최신법령을 입수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제한이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요구되는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관련 법률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하나 이상의 인도네시아 로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령과 실무에 대한 다각도의 질의 및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중국 정부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가입 관련 의견수렴 절차 진행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23.17만명에 달하였습니다. 외국인 취업인구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도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자원부')에서 지난 달 10일에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집행방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의견수렴 절차는 1주 기간으로 6월 17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 법규 제정 및 시행일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의 일환으로 조만간 정식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법」을 참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안은 취업간주, 적용대상, 보험가입 등록, 사회보험 대우, 승계, 생존증빙방법, 국가 간 협정의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직접 중국 현지 기업, 사회 단체, 변호사사무소 등 업체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외, 해외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으나 중국 지사, 대표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도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는 중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 종류와 동일하게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도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법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혜택 중 양로보험의 경우 외국인이 연금 수령 연령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계좌를 유지하여 중국에서 재취업할 때 기존 납입 연한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계좌 내의 예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개인 계좌 내의 예금잔액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매년 1회 생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은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의 직권으로 월별 또는 부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외국인 국적국과 중국이 사회보험 관련 국가간 협정을 맺은 경우는 사회보험 관련하여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2003년 2월에 「양로보험 납부의무 상호면제 임시조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협정은 중국 내국법을 통해 2003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국에서 양로사회보험 납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 대하여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취업자에 대하여 '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받는 실익에 비해 근로자와 고용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자원가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브라질 진출 시 주재원 비자 취득



이유경 변호사

1. 들어가면서

브라질에서 현지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이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지난 호부터 몇 회에 걸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취득 문제에 이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주제는 브라질 현지에서의 토지 취득(이하에서 매입 뿐만 아니라 임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2. 외국인의 토지 취득의 제한

일반적으로 브라질법상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토지 취득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município, municipality)는 도시지역(área urbana, urban area)과 농촌지역(área rural, rural area)으로 구성되는데,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 외국인(개인)의 경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1인의 외국인은 매입면적과 임대면적을 합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면적에 상한이 있습니다. 개별 시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5,000 ha 정도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법률 제5709/71호 제3조, Lei no. 5,709/71, artigo 3o.).

나. 외국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와 달리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외국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공통 제한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농촌 지역의 총 취득면적은 당해 시 면적의 25% (법률 제5709/71호 제12조 전문, Lei no. 5,709/71, artigo 12, caput)이며,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허용되는 총 면적은 당해 시 면적의 10% (법률 제5709/71호 제12조 제1항, Lei no. 5,709/71, artigo 12, inciso I)입니다. 위 제한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브라질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토지 취득시 유의사항

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현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통상의 토지취득 절차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를 확인하여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고지 받지 않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조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 체납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소유자에 대한 세금 체납은 관할 시/주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는 연방법원 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한데 주법원 사이트로도 소송 유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편, 브라질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우리 법률과 마찬가지로 등기경료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 매입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2항에서 살펴본 농촌지역에서와 같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취득면적의 상한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부동산 등기소(Cartório de Registro de Imóveis)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확인 사항

(1)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된 문제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장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단 이외의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하는 장소가 시 정부의 토지편제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입주 전에 공장 설립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장 설립을 위한 환경허가와 건축허가 등도 토지 취득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조세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에 관한 과세권은 시 정부가 가지며, 부동산 취득세(Imposto sobre a Transmissão de Bens Imóveis-ITBI)는 시 정부의 세율에 따릅니다. 상파울루시의 경우에는 ITBI 세율은 2%입니다(상파울루시 법률 제51,627/10호 제12조 제II항, Decreto no. 51,627/10, artigo 12, inciso II). 다만,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ITBI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헌법 제156조 제2단락 제1항. Constituição Federal, artigo 156, parágrafo segundo, inciso I.)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추가로, 연방 정부 관할인 농촌 지역 부동산 소유세(Imposto sobre a Propriedade Territorial Rural-ITR)도 고려해야 하는데, ITR의 경우 토지 면적과 사용도에 따라 0,03%~20%가 부과됩니다.

(3) 기타

투자를 유치하는 주 정부나 시 정부가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 지원하거나 무상 장기 임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810 | 2011. 6. 15.



[Global 트렌드]

브라질 항공 산업

항공기 생산 대국...중형 제트기 선두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거대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나 세계적 광물 기업인 발리(Vale)가 있다는 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4위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브라질 기업이라는 사실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엠브라에르의 매출은 535억 달러에 이르고, 순이익은 3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엠브라에르는 70~120석...

정철 변호사

cjung@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베트남 부동산 시장

거품 빠지는 주택·오피스...투자 적기

김주현 변호사
jhkim@jipyong.com

베트남 부동산 경기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와 베트남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더니 작년에는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한 해에만 호찌민시에 새로 공급된 주택이 2만 가구(2009년 1만여 가구)가 넘었고, 하노이시에는 1만5000가구(2009년 1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됐다. 오피스 건물도 하노이시에...

[PDF](#) [e-Link](#)



[Global 트렌드]

중국판 나스닥 '창업판'

220여 개 상장...시장 시스템은 불안

최정식 변호사
jschoi@jipyong.com

지난 2009년 10월 말 중국 선전거래소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創業版, ChiNext)의 닷을 올렸다. 창업판은 2009년 10월 30일 28개의 기업이 상장하면서 거래가 시작됐다. 창업판에 상장된 회사는 올 4월 14일 200개를 돌파했고 6월 3일 현재 224개로 급증했다. 창업판은 상장 회사 규모와 세간의 관심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창업판에 상장(4월 14일 기준)된 200개 기업의 상장 당시 평균 주가수익률(PER)은 69.7배다. 신연...

[PDF](#) [e-Link](#)



김홍영 전문의원

hykimu@jipyong.com

[Global 트렌드]

새로이 각광받는 규슈(九州)

한 중 투자 잇따라...日 공장도 속속 건립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규슈는 한반도에서 제일 가깝고 동북아시아라는 큰 잠재 시장에 인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와의 지리적 거리, 낮은 경제 기여도 등 때문에 각광받지 못했다. 이런 규슈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규슈의 인구는 약 1320만 명이고 면적은 남한의 42%(4만2000km²), 일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은 8.7% 정도다. 규슈는 메이지 유신...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홈페이지)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공사대금】

1. 판결의 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A(발주자)는 B(원사업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C(수급사업자)에게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B로부터 방수공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C는 A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C로부터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B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 있었지만,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은 B에게 기성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심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특정 공종이 아니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전체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A는 C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발주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C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인 B에게 위 방수 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A는 C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공사대금](#)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1.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 상향조정 등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004호, 2011. 7. 6. 시행)

1.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제2조 및 제3조).
2.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으며,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경우 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제6조).
3.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제7조).
4. 다운로드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004호, 2011. 7. 6. 시행\)](#)

2.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시행)

1.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대부금에 대한 최고이자율이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되었습니다(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2. 위 사항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참조).
3. 다운로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시행\)](#) Jipyong & Jisung

-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자원 & 인프라 투자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자원 & 인프라 투자법률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11. 6. 28.)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자원 & 인프라 투자법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1세션에서 호주 로펌 Freehills의 John Dick 변호사(Managing Partner)와 인도네시아 로펌 SOEMADIPRADJA & TAHER의 Dezi Kirana 변호사(Partner)가 'Investing in Indonesia'를 발표하였고, 2세션에서는 John Dick 변호사의 'Indonesia's Mining Law – What it mea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3세션에서는 Dezi Kirana 변호사가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onesia'를 발표하였고 4세션에서는 지평지성의 한승혁 호주변호사와 정철 변호사가 각각 '외국투자자를 위한 실용적 인도네시아 법률정보', '인도네시아 조림산업 투자 사례 검토'를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5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선에서는 Freehills의 Shane Kyriakou 변호사(Partner)가 'Australian coal sector - Greenfield Opportunitie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1. 관련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투자설명회(2011. 7. 5.)

2. 행사사진



개회사를 하고 있는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좌)와 사회를 맡은 이행규 변호사(우) (2011. 6. 28.)



발표를 하고 있는 Freehills의 John Dick 변호사(좌)와 S&T의 Dezi Kirana 변호사(우) (2011. 6. 28.)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발표를 하고 있는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좌)와 정철 변호사(우) (2011. 6. 28.)



발표를 하고 있는 Freehills의 Shane Kyriakou 변호사(좌)와
폐회사를 하고 있는 지평지성 감성 대표변호사(우) (2011. 6. 28.)



세미나 현장(좌)과 Q&A 시간(우) (2011. 6. 28.)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캄보디아 사무소 이전



(사진 : 이전한 지평지성 캄보디아 사무소)

지평지성의 캄보디아 사무소가 지난 7월 1일 캄보디아 프놈펜타워 9층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전한 사무실의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 주소 :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 전화 : 855-23-964-022
- 팩스 : 855-23-964-033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1 Edition에서 2년 연속 한국 Shipping & Maritime 및 Insurance & Reinsurance 2개 부문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춘원 변호사)

지평지성 이춘원 변호사는 Asialaw Leading Lawyers 2011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및 Insurance & Reinsurance 2개 부문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춘원 변호사는 작년에도 Shipping & Maritime 및 Insurance & Reinsurance 2개 부문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링크]

- Asialaw Leading Lawyers 2011 Edition - Insurance&Reinsurance, Shipping&Maritime 분야
-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등 2개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Jipyong & Jisung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수련대회에서 '신경정신과 의료분쟁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 外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수련대회에서 '신경정신과 의료분쟁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전국 신경정신과 전공의(레지던트) 4년차 과정 의사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준비 전문연수프로그램으로 김성수 변호사는 2010년부터 신경정신과 영역의 의료분쟁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의료문제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의료전담재판부(민사15부, 18부)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문제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상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30여명의 변호사가 참가하는 의료사고 및 의료법 관련 전문 변호사 모임으로, 월 1회 세미나 개최나 외부인사 및 단체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전자소송 수행과 관련한 경험 등을 발표한 이번 회의에는 윤종수 위원장, 최공웅 부위원장(전 특허법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여름방학 인턴 과정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08년 10월에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 노동, 고용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최진숙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교육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 및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진숙 변호사)

지평지성 최진숙 변호사는 지난 6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교육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 및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된 이번 의무연수교육은 부동산을 주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Jipyong & Jisung](#)

이행규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투자법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투자법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행규 변호사](#)는 캄보디아 투자 관련 법령의 내용과 분쟁해결 절차, 외국인 투자 관련 최근의 입법 동향 등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김도요 변호사, UN기후변화협상 AWG-LCA 17차 회의 및 AWG-KP 16차 회의 두번째 세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UN기후변화협상의 SBI 및 SBSTA 34차 회의, AWG LCA 14차 및 AWG-KP의 16차 회의의 두번째 세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금융투자협회에서 '러시아 자본시장 제도 및 법률제도 소개'를 주제로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지평지성 이형규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투자법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형규 변호사는 캄보디아 투자 관련 법령의 내용과 분쟁해결 절차, 외국인 투자 관련 최근의 입법 동향 등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In Van Chhoan 캄보디아 변호사, 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인 중 한 명으로 선정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In Van Chhoan 캄보디아변호사)

지평지성 캄보디아 사무소의 In Van Chhoan 캄보디아변호사는 지난 6월 29일 상사중재인 시험에 통과하여 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인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 84-4-6266-1901 Fax :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964-022 Fax : 855-23-964-033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